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5. 9. 1.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8. 14. 한선미 의원 외 6인

나. 회부일자: 2025. 8. 18.

다. 상정일자: 제278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25. 9. 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한선미 의원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선미 의원 외 6인

2) 제 안 일 : 2025. 8. 14.

3) 회 부 일 : 2025. 8. 18.

나. 제안이유

성인 및 청소년에게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됨.

다.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2)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3)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4)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5) 비밀준수의 의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안 제7조)

라.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청소년 보호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출

3) 기타

- 가) 입법예고 : 2025. 8. 5. ~ 2025. 8. 11. (의견 없음)

3. 검토의견 [신준호 전문위원]

가. 조례 제정 배경

- 정부는 2025년 4월 16일부터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¹⁾으로 해외 밀반입 차단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아울러, 지난 ‘2023년 4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마련했으나, 교육·홍보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1) 보도자료 : “마약류 범죄 일망타진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25.4.16.)

-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481명으로 5년 전인 2017년(119명)의 4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향정) 사범이 332명(2022년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마약 108명, 대마 41명 순²⁾이라고 함.
- 이 같은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와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 급증은 단순 범죄 증가를 넘어 의료 체계와 처방 관리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방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나. 주요 조문 검토

- 조례안의 구성은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고(안 제1조~안 제2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과 예방사업의 시행(안 제5조),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6조), 관련 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으로 본칙 7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되어 있음.
-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마약류 등의 남용하는 것을 예방의 책무를 근거로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의 목적을 명시하였음.
- 안 제2조 정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의 정의를 동일하게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였음.

2) “청소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 3년새 48.6%↑ ‘펜타닐 패치’급증”(보도자료 : 서울경제, 2024.1.21.)

-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는 법 제2조의2제1항의 마약류 등의 남용 예방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근거로 마약류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위험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의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음. 현재 마포구는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기관교육과 성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약류 익명 검사도 실시하고 있음.
- 따라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기반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과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재정·현실적으로 무리가 없어 보임.

[표 1. 마포구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실적]

(2025. 6. 30. 현재)

구분	계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개소	52	24	12	5	1	10
횟수	72	28	21	5	3	15
명수	6,172	840	2,577	2,005	54	693

- 안 제6조 비밀준수의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관련 사업 종사자의 비밀준수를 강조하고자 규정함.
-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은 법에 따라 경찰 및 사법기관과의 연계로 마약류 등의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과 마약류의 폐해에 대해 주민 홍보 등을 유관기관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다. 종합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자치구 차원의 규범적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청소년의 노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 콘텐츠 기반 홍보를 통해 접근 자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함.
-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청소년의 노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 콘텐츠 기반 홍보를 통해 접근 자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함.

[관 계 법 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